

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

☐ 법제처
 - 1 -

 국가법령정보센터

<신 설>	제10조의2(위탁사업의 고시 등) ①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위탁사업자 2.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. 위탁의 범위 4. 정비방법 5.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 계획 2. 위탁수수료 3.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.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.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.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[본조신설 2016.7.19]
<신 설>	제10조의3(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)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 1. 예상 수입액: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. 예상 지출액 가.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·건축물 또는 권리의 취득 비용(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) 나. 철거, 보수 및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.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, 설계, 감리, 분양, 유지관리,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, 제세공과금 및 직·간접 경비 라. 위탁수수료 ②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.[본조신설 2016.7.19]
<신 설>	제10조의4(위탁사업의 완료) ①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확인, 「건축법」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

	사용검사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[본조 신설 2016.7.19]
<신 설>	제10조의5(사업대행자의 지정 등) ①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사업대행자 2.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. 대행의 범위 4. 정비방법 5.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 계획 2. 대행수수료 3.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.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5.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.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“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. 기존의 건축허가(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) 또는 사업계획(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)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[본조신설 2016.7.19]
<신 설>	제10조의6(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)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 1. 예상 수입액: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. 예상 지출액 가.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보상액(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)

	나. 철거, 보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.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, 설계, 감리, 자금조달 등 에 드는 비용, 제세공과금 및 직·간접 경비 라. 대행수수료 ②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 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.[본조신설 2016.7.19]
<신 설>	제10조의7(사업대행의 완료) 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 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사 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정비계획 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.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확인, 「건축법」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 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·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[본조 신설 2016.7.19]
제11조(정비기금의 설치 등) ① (생 략)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. 1. (생 략) 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3. (생 략) ③ (생 략)	제11조(정비기금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2조의2(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)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 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 접 또는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 사중단 건축물(이하 “선도사업 건축물”이라 한다) 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 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및 해당 건축 물의 건축주,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.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,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 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 가권자(「건축법」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

	한다)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(이하 “선도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,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야 한다.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·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⑧ 제7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·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⑨ 시·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8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,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6.7.19]
--	---